(　　)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

[고객보관용]

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

등록번호	환자성명	진료기간	야간(공휴일)진료
			□야간 □공휴일

진료과목	질병군(DRG)번호	보험유형	병실	환자구분	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

항목		급여			비급여	금액산정내용	
		일부본인부담		전액본인부담			
	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			
필수항목	진찰료					진료비총액⑥ (①+②+③+④)	
	입원료						
	식대					환자부담총액⑦ (①+③+④+⑤)	
	투약및조제료 행위료						
	투약및조제료 약품비					감면금액⑧	
	주사료 행위료						
	주사료 약품비					환자실부담액⑨ (⑦-⑧)	
	마취료						
	처치및수술료					이미납부한금액⑩	
	검사료						
	영상진단료					납부할금액⑪ (⑨-⑩)	
	방사선치료료						
	치료재료대					납부한금액⑫ 카드	
	재활및물리치료료					현금영수증	
	정진요법료					합계	
	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					공급가액/세액	/
선택항목	CT진단료					납부하지않은금액(⑪-⑫)	
	MRI진단료					현금영수증( )	
	PET진단료					신분확인번호	
	초음파진단료					현금승인번호	
	보철·교정료					카드매출전표	
	의지보장구					카드번호	
	제증명료					카드종류	
	기타					승인번호	
	65세이상등정액					할부기간	
정액수가(요양병원)						금액	
포괄수가진료비						가맹점번호	
합계		①	②	③	④	영수일자	
상한액초과금		⑤				수납자확인	

요양기관종류	□의원급·보건기관 □병원급 ■종합병원 □상급종합병원(종합전문요양기관)			선택진료신청	유□ 무■
사업자등록번호	410-82-04233	상호	보훈공단광주보훈병원	전화번호	062-602-6114
사업장소재지	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			대표자	김 옥
	년 월 일				

항목별설명

1. 일부본인부담 :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요양기관 지역 환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
   - 외래 본인부담률 :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% ~ 60% 등 부담
   - 입원 본인부담률 : 20% 등
   ※ 식대 : 50%(의료급여는 20%) CT, MRI, PET : 외래 본인부담률 따름
2. 전액 본인 부담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5 또는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부담이 부담
3. 상한액 초과금 :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연간 400만원 (차상위환자 200만원)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

일반사항안내

1. 이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43조의 2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), 홈페이지 www.wetax.go.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3. 계산서·영수증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의료비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)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: http://현금영수증.kr)

주: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

귀하께서 가셔야 할 곳

순번	장소
1	
2	
3	
4	
5	
6	
7	
8	

진료접수(예약)증

등록번호	
성명	
진료과	
진료의사	
진료일자	
진료시간	

원내투약번호	
원외처방번호	
등록번호	
성명	
진료과	
진료일자	

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

▣외래진료비절차▣

전화예약 · 진료예약

접 수[접수비 수납]

- 원무1부 : 국가유공상이자, 애국지사 고엽제환자
- ~~원무2부~~ : 무공 · 보국수훈자, 유 · 가족 참전유공자, 10년장기제대 군인, 일반 등
- 초 진 : 건강보험증, 국가유공자증 지참 (의료급여1,2종:진료의뢰서 제출)
- 재 진 : 건강보험증, 국가유공자증 지참

진 료

- 해당과 진료실
- 다음 진료일 예약

수납[진료 · 예약비]

투약 및 검사

- 투 약 : ~~원무2부~~ 원무1부에서 처방전 수령
- 검 사 : 해당 검사실

원내투약자는 약번호가 약국 전광판에 표시되면, 투약번호를 절취하여 약과 교환하시기 바라며,

원외투약자는 ~~원무2부~~ 원무1부에서 원외 처방전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▣진료비 감면 안내▣

감 면 대 상 자	감 면 요 율
무공 · 보국수훈자	본인부담진료비의 60%
4.19 혁명 공로자	60%
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	60%
국가유공자의 유 · 가족	60%
참전유공자	60%
창군 ·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	50%
5 · 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및 5 · 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	60%
기타 5 · 18민주화운동 희생자	50%
기타 5 · 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	30%
특수임무사망 · 행불자 및 부상자의 유가족, 공로자 및 그 유가족	60%

감 면 제 외 항 목

진료재료대, 식대, 수혈대, 제증명료, 치과보철재료대, 보장구대, 상급병실료, 외모개선목적진료비

▣전화번호안내▣

대 표 전 화:[062]602-6114

예약/변경/취소:[062]602-6363

▣진료비 무인수납기 안내▣

전화예약 → 접수비 자동 수납기
진료과진찰 → 진료비 자동 수납기
(원외처방전, 진료비영수증 발행)
※ 신용카드, 현금 수납 가능

신용카드 할부 거래 계약서

제 1 조 (할부수수료율) 할부수수료율의 실제 년간 요율은 (표1)과 같다.
제 2 조 (목적물의 인도 등) 목적물의 인도는 할부거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.
제 3 조 (회원의 철회권) 회원은 할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철회 요청을 한 경우에 가맹점앞 철회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제출 또는 발송함으로써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상품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품의 멸실,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의 상품인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.
제 4 조 (회원의 기한이익 상실) 회원은 할부금을 2회이상 연속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1/10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제 5 조 (회원의소유권유보) 회원은 할부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될 수 있다.
제 6 조 (가맹점의 할부계약 해제) 가맹점이 회원의 할부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,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. 또한 소유권이 가맹점에 유보된 경우에 가맹점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제 7 조 (특약사항) 신용카드업자 상호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매출표 전면에 표시된 카드 발급사가 하단의 신용제공자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발급사를 신용제공자로 본다.

(표 1) 신용제공자의 주소 및 할부수수료율

국 민 카 드	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	년11.0-21.4%	삼 성 카 드	서울 중구 연지동 1-7	년10.0-20.0%
비 씨 카 드	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7	년 8.8-18.5%	L G 카 드	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	년12.0-21.0%
외 환 카 드	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-34	년11.5-21.9%	현 대 카 드	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-1	년12.0-21.2%
신 한 카 드	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	년11.0-18.8%	롯 데 카 드	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	년12.0-20.0%
하나VISA	서울 강남구 삼성동 169-8	년12.0-16.3%	※ 위의 할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별로 변경될 수 있음.		

▣환불금액영수확인서▣

환 불 금	
주민번호	생년월일
환자와의 관계	
전 화 번 호	

위 금액을 환불 받았음을 확인함.

수령인 (인)